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제2조 (목적)</p> <p><u>10. <신설></u></p>	<p>제2조 (목적)</p> <p><u>10. 로봇 부품의 제조 및 판매</u></p>	<p>-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근거 마련.</p>
<p>제9조 (신주인수권)</p> <p>(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증권거래법 제2조</u>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u>증권거래법 제191조의7</u>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u>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u>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u>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u>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u>증권거래법 제192조</u>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p>제9조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u>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u>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u>제9조의2에 의하여</u>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u>제9조의3</u>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u>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p>-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p>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p> <p>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p> <p>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p>
<p>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p>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주주(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p>-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p>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제9조의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p> <p><신설></p>	<p>제9조의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p> <p>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p> <p>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p> <p>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p> <p>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p> <p>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근거 마련.</p>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제17조 (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이사</u> <u>사장이</u> 소집한다.</p> <p>② <u>대표이사</u> <u>사장</u>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 (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u>대표이사</u>가 소집한다.</p> <p>② <u>대표이사</u>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p>제19조 (소집지)</p> <p>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② <신설></p>	<p>제19조 (소집지와 개최방식)</p> <p>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② <u>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p>-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p>
<p>제20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 (<u>사장</u>)으로 한다.</p> <p>② <u>대표이사</u> <u>사장</u>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로 한다.</p> <p>② <u>대표이사</u>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p>제25조 (주주총회의 대리행사)</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위임장)</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 (주주총회의 대리행사)</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p>
<p>제28조 (이사의 수)</p> <p>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9명</u> 이내로 하고, <u>사외이사</u>는 이사총수의 <u>4분의 1</u> 이상으로 한다.</p>	<p>제28조 (이사의 수)</p> <p>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5명</u> 이내로 하고, <u>독립이사</u>는 이사총수의 <u>3분의 1</u> 이상으로 한다.</p>	<p>- 이사 정원 변경 및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 등.</p>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u>대표이사</u> <u>사장과 부사장을</u>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u>대표이사를</u>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p>제33조 (이사의 직무)</p> <p>① <u>대표이사 사장은</u>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u>대표이사 사장의</u>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3조 (이사의 직무)</p> <p>① <u>대표이사는</u>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u>사장</u>,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u>대표이사를</u>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u>대표이사</u> 유고시에는 <u>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p>제37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p> <p>④ <신설></p>	<p>제37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p> <p>④ <u>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u></p>	<p>-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이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p>
<p>제40조 (감사의 수)</p> <p>당 회사는 <u>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u></p>	<p>제40조 (감사의 수)</p> <p>당 회사는 <u>1인의 상근감사를 둔다.</u></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현 행	변 경	변경의 목적
<p>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u>2023년 3월 29일부터</u>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u>2026년 7월 6일부터</u>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 조항 및 문구 정비.</p>
<p>부칙 제4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적용례)</p> <p><신설></p>	<p>부칙 제4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적용례)</p> <p>제19조의 개정 규정은 <u>2027년 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 경과규정 신설.</p>
<p>부칙 제5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p> <p><신설></p>	<p>부칙 제5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p> <p>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u>2026년 7월 23일부터</u>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u>2027년 7월 22일</u>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u>3분의 1 이상</u>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 경과규정 신설.</p>

2.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임직원 보상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장내 직접취득으로 보통주 80,000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임직원 보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80,000주입니다.
- 위 보상목적으로 취득·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80,000주 전량을 '2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까지 보상용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 지급수량이 예상수량보다 적어 남는 주식의 있으면 '27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보상 목적으로 장기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실제 처분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임직원의 주식보상 선택 비율, 보상시점 주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에서 규정한 보유 개시시점을 '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7.6.)로, 예정된 처분시점을 '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전의 전일로 상정하였습니다.

	보유 개시시점		예정된 처분시점	
	주식종류	자기주식수	주식종류	자기주식수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보통주 (소각목적)	80,000주 (0주)	보통주	-*
	(보상목적)	(80,000주)		
	장내 직접취득		장내 직접취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9,240,695주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	보통주	0.4%	보통주	-*

*실제 처분수량 및 추가 취득수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라. 예정된 보유기간

-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 예정된 처분시기

- 임시주주총회일(2026년 07월 06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전일

3.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성명 (생년월일)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당사와의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결격여부
사내이사	안효정 (72.09.22)	- 미국 포드햄 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 이튼 코퍼레이션 미국 클리블랜드 본사 국제개발전략 애널리스트(前) - 도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샌프란시스코 포트폴리오 매니저(前) - 주식회사 유니크 해외영업담당 이사(現)	이사회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외이사	강위주 (71.03.31)	-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석사 - L&T밸브 한국 지사장(前) - (주)에너지테크 영업본부 이사(前) - (주)피케이밸브엔지니어링 감사(前)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안	회의목적사항	보수한도	비고
제3호	상근감사 정충희 감사보수 승인의 건	1억 원	- 퇴임 전(26.01~26.03) 발생한 보수 1억 원.
제5-1호	사내이사 안영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원	
제5-2호	사내이사 안재범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원	
제5-3호	사내이사 안효정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억 원	
제5-4호	사외이사 전의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원	
제5-5호	사외이사 강위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원	
제5-6호	퇴임 사내이사 안정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원	